

20. 法人稅法施行令中改正令

大統領令 第14,861號 1995.12.30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등(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는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동기할 것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동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①

법인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손비로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19조 제3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국가망사업을 말한다.

제2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제25조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34호를 삭제한다.

10.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제30조 본문중 “계기”를 “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단서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0조”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기계장치”를 “생산설비”로 한다.

제37조의2 제1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중 총리령이 정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3조 제3항중 “음식점업·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을 “음식·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중 법인이 하나를 선택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납세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한 법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납세지를 특별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75

나. 납세지를 광역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60

다. 납세지를 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50

라. 납세지를 군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40

2. 당해 사업연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광역시·시·군·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으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접대비지출액} \times \frac{\text{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text{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75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60

다. 시지역은 100분의 50

라. 군지역은 100분의 40

마. 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납세지지역의 비율

제43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중전의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자치구설치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

⑦ 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5항 제1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5항 제1호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 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5항 제1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5항 제2호 각목의 율[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서 기밀비(당해지역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제5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5항 제2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43조의2 제9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제44조 제3항 본문중 “계기”를 “규정”으로 하고, 동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1,000분의 2”를 각각 “1,000분의 1”로 하며, 동항 제3호중 “1천분의 40”을 “1,0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1

천분의 2”를 “1,000분의 1”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제45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에 관한 결의가 있을 때
2. 퇴사 또는 탈퇴로 인하여 지분의 환급으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퇴사 또는 탈퇴가 있을 때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 때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합병이 있을 때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3(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단서중 “변경하고자”를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로 하며, 동조 제4항 본문중 “범위내에서”를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로 한다.

①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하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한다)과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이라 한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감가상각충당금)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로 구분(구분된 자산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며, 이하 “내용연수별로 구분”이라 한다)하여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충당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각액총액을 일괄하여 감가

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연수(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2. 제5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3. 시험연구용자산
 4. 무형고정자산
- ②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상각범위액·감가상각충당금 및 상각부인액”을 “및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①법인의 상각액의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55조 제2항중 “1,000원”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5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

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고, 동조 제1항 전단중 “취득”을 “취득하거나 양도”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취득”을 “취득하거나 양도”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59조 제1항 전단중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다음에 “(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삽입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78조의2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78조의2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begin{array}{r}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 \text{사업연도의 법인세액} \end{array}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 \\ \text{업연도의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 사} \\ \text{업연도의 법인}}{}$$

⑧법 제24조의3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⑨제7항 및 제8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 제4항중 “신고기한 10일전까지 소관세무서장”을 “신고(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3(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접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

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 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④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

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3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10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⑧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3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는 방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3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외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4(채권등의 증도매도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등) ①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채권등을 금융기관에게 증도매도하는 경우 제91조의3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 제39조의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9조 제3항 각호의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③제9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제91조의3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④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

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91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 제1항 본문중 “제39조 제1항”을 “제39조”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7호중 “제81조 제1항 제2호”를 “제81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다만,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100조의4 제2항중 “매출” 다음에 “(제9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의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5(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①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

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⑤신탁재산이 제3항 제2호의 세액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환급 또는 충당한 금액이 당해 채권등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제91조의 제2항을 준용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을 채권등을 매도한 날의 다음달에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

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제4항 제1호중 “(검열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12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로 한다.

제1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5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

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57조의2의 규

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24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4조의2 제13항중 “제53조”를 “제162조”로 하고, 동조 제14항중 “1976년”을 각각 “1984년”으로, “1977년”을 각각 “1985년”으로 하며, 동항 본문중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24조의3 제6항 후단중 “제15조 제4항”을 “제154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9항중 “제44조 제6항”을 “제157조 제5항”으로, “제44조의2”를 각각 “제158조”로 한다.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토지등에서 제외한다.

1.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등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

제124조의4 제4항 제4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로, “1년”을 “3년”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4조의5 제6항중 “제80조”를 “제80조 제1항 제2호”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10항중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하며, 동조 제11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59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59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의5 제13항중 “제1항 제1호”를 각각 “제1항 제3호”로 하고, 동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제124조의9 본문중 “계기”를 “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124조의14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제23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45조”를 “제96조·제97조 및 제100조”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부동산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부동산등 양도소득과세표준(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로 “제55조 및 동법 제58조”를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16조”를 “제93조”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

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의2(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일 이전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중 “제56조 내지 제59조”를 “제56조·제58조·제5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 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2 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 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계산의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과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등의 원천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2 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조서제출의 적용례) 제128조 및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에게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1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공제액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9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의 이자계산방식은 이 영 시행전에 당해 채권등의 거래시 적용하여 온 이자계산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1조(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납세지를 둔 법인으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특례) ①법률 제5033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1조의4 제1항 및 제100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2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전까지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정하고,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잔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기관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추가함(영 제21조의2 제1항).
- 나.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전기, 가스 사업자등 특정한 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사부담금 손금 인정대상 사업의 범위에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추가하여 통신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에 대하여도 전액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 제2항).
- 다.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정비율(대기업 50퍼센트, 중소기업 30퍼센트) 이상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은 75퍼센트이상, 광역시 소재기업은 60퍼센트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퍼센트이상, 군지역 소재기업은 40퍼센트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50퍼센트이상으로 하여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함(영 제43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
- 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접대비에 추가하여 예금유치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집권유비에 대하여 적금계약금액등의 0.2퍼센트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용인정한도를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영 제44조 제3항).

마.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과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하는 등 현행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영 제91조의3·제91조의4 및 제100조의5).

〈법제처 제공〉

엄마처럼 꼼꼼하게 아빠처럼 튼튼하게